

출원번호통지서

출원일자 2020.03.12
특기사항 참조번호(NDT2020070)
출원번호 40-2020-0041323 (접수번호 1-1-2020-0261911-51)
출원인성명 이철(4-2017-046898-9)
대리인성명 특허법인 누리(9-2012-100021-8)

특 허 청 장

<< 안내 >>

1. 귀하의 출원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으며, 이후의 심사 진행상황은 출원번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. 출원에 따른 수수료는 접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동봉된 납입영수증에 성명, 납부자번호 등을 기재하여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.
※ 납부자번호 : 0131(기관코드) + 접수번호
3. 귀하의 주소,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, 즉시 [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(경정), 정정 신고서]를 제출하여야 출원 이후의 각종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특허로(patent.go.kr) 접속 > 민원서식다운로드 >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
4. 특허(실용신안등록)출원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, 등록결정 이전 또는 의견서 제출기간 이내에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보정할 수 있습니다.
5. 외국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PCT 제도(특허·실용신안)나 마드리드 제도(상표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국내출원일을 외국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※ 제도 안내 : <http://www.kipo.go.kr>-특허마당-PCT/마드리드
※ 우선권 인정기간 : 특허·실용신안은 12개월, 상표·디자인은 6개월 이내
※ 미국특허상표청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리나라에 우선권주장출원 시, 선출원이 미공개상태이면,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미국특허상표청에 [전자적교환허가서(PTO/SB/39)]를 제출하거나 우리나라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6. 본 출원사실을 외부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특허출원 10-2010-0000000, 상표등록출원 40-2010-0000000
7.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(기업)가 명확하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, 특허법 제62조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특허거절결정되거나 특허법 제133조에 따라 등록이후에 특허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8. 기타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동봉된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상표 심사절차 안내

우리 청에 상표를 출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 고객님의 상표등록출원은 다음과 같이 처리됨을 안내해 드립니다.

고객상담센터 : 1544-8080



- 1 먼저, 방식심사를 받게 됩니다.**
 - 출원인격적, 필수사항 기재, 수수료납부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,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요구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2 심사는 출원순서대로 하며, 지정상품이 속한 분류에 따라 처리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**
 - 지금 출원된 건은 평균 약 6 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. ('14. 12 월말 기준).
 - 심사착수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상표출원 건수가 연간 20 만여 건으로 매년 누적된 출원이 쌓여 있기 때문이며, 고객님의 출원의 실제 심사진행 상황은 특허청 홈페이지 '특허로'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3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보내는 '의견제출통지서' 를 받게 되면, 고객님의께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심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.**
 - 통계에 따르면 심사 건의 55% 정도가 통지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
- 4 출원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, 의견서 등을 통해서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'출원공고' 됩니다.**
 - 출원공고제도는 상표법 제 24 조에 따라 출원상표를 최종 등록결정하기 전에 일반인에게 공개 (2 개월간) 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 (공중심사).
- 5 출원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다시 심사가 진행되고,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.**

참고



- 1)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을 3~4 개월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
- 2) 거절결정서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'거절결정불복심판'을 청구하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3)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(kipo.go.kr)를 참고하시고, 문의사항은 고객상담센터 (1544-8080)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

상표심사 흐름도

